

# 효사랑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## 1. 계약목적

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## 2. 계약기간

-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.
-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서비스제공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(또는 보호자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, 입소자(또는 보호자)은 이후 15일 이내에 서비스제공자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.
-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(또는 보호자)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 (단,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.)
-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- ⑥ 입소자(또는 보호자)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## 3.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→ 급여이용 정보 참조 바람

## 4. 계약자, 입소자의 권리 · 의무

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### 1)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(단, 병원입원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.)
-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.)
-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### 2) 입소자의 의무

-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-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
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
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### 3) 입소자의 권리

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,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

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

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

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

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지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, 존경을 받을 권리

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

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

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

⑨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
### 4) 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권리

① 입소자와 관련된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하게 요청할 권리

②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

③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

④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

### 5) 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의무

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

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

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

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

⑤ 입소자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·퇴원 절차, 비용납부 등 제반 모든 절차진행에 대한 책임의무

## 5.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
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)

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시설의 최고 통지(서면,이메일,문자전송)를 받고 그날로 부터 14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.

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
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
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, 다만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국고 보조금 포함)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.

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.